

면 서울特別市地下鐵公債條例案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시지
요?

(「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다 함으로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地下鐵公債條例案中改正條例案은 原案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체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하철공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한다.

제1조증 “지하철도”를 “도시철도”로 하고,
“지하철도의 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을 “도시철
도법”으로 하며, “지하철공체”를 “도시철도공
체”로 한다.

제2조증 “지하철공체”를 “도시철도공체”로
하고, “국무총리”를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증 “지하철공체”를
“도시철도공체”로 하고, “지하철도의 건설및운
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도시철도법시행령”으
로 하며, “지하철”을 “도시철도”로 하고,
“지하철도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을 “도시철도
법”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증 “지하철공체”를
“도시철도공체”로 하고, “지하철도의 건설및운
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도시철도법시행령”으
로 한다.

제5조증 “지하철공체”를 “도시철도공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서울特別市地下部分土地使用에 따른補償基 準에 대한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1時 44分)

○委員長 李永和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地下部分土地使用에 따른補償基準에 대
한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서울特別市 地下部分土地使用에 따른 补償
基準에 대한 條例案은 지난 定期會議時 朴
夏榮, 方孝吉, 梁元模委員 세 분으로 條例
審查 小委員會를 構成해서 條例案에 대하여
審查를 해 왔으므로 먼저 朴夏榮 小委員長
님으로부터 그 동안 審查한 結果에 대하여
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夏榮委員님 나오셔서 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查小委員長 朴夏榮 條例審查小委員長
朴夏榮委員입니다. 本 地下部分土地使用에 따른
補償基準에 대한 條例案審查小委員會의
審查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永和 이게 第1次 報告죠?

○條例審查小委員長 朴夏榮 네.

方孝吉委員, 梁元模委員 그리고, 本委員으로
구성된 條例案審查小委員會는 지난 定期
會 때 交通委員會에서 回附하여 주신 本
條例案에 대하여 1992年 1月 29日에 第1次
小委員會 및 2月 18日에 第2次 小委員會를
열어 執行部側인 地下鐵建設本部長을 參席시
킨 가운데 深度 있는 檢討와 측조심의를 하
였습니다.

本 條例案은 여러 委員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地下鐵建設에 따른 該當地域에
地下部分土地使用에 대한 구체적 补償範圍와
補償對象地域의 分類, 补償費算定 및 區分地
上權設定 등을 规定하고자 하는 것입니다.